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 - 79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9. 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정비
- 나.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휘장변경 및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삭제
- 다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7. 08. 10. ~ 08. 30. (제출의견 없음)
 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구민상(이하 “구민상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민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별지 제4호서식까지에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까지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감사부서로 하여금”을 “감사담당관에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”를 “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부서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1. 구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
2.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게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

제17조제2항 중 “표창수상자는”을 “구청장은 표창수상자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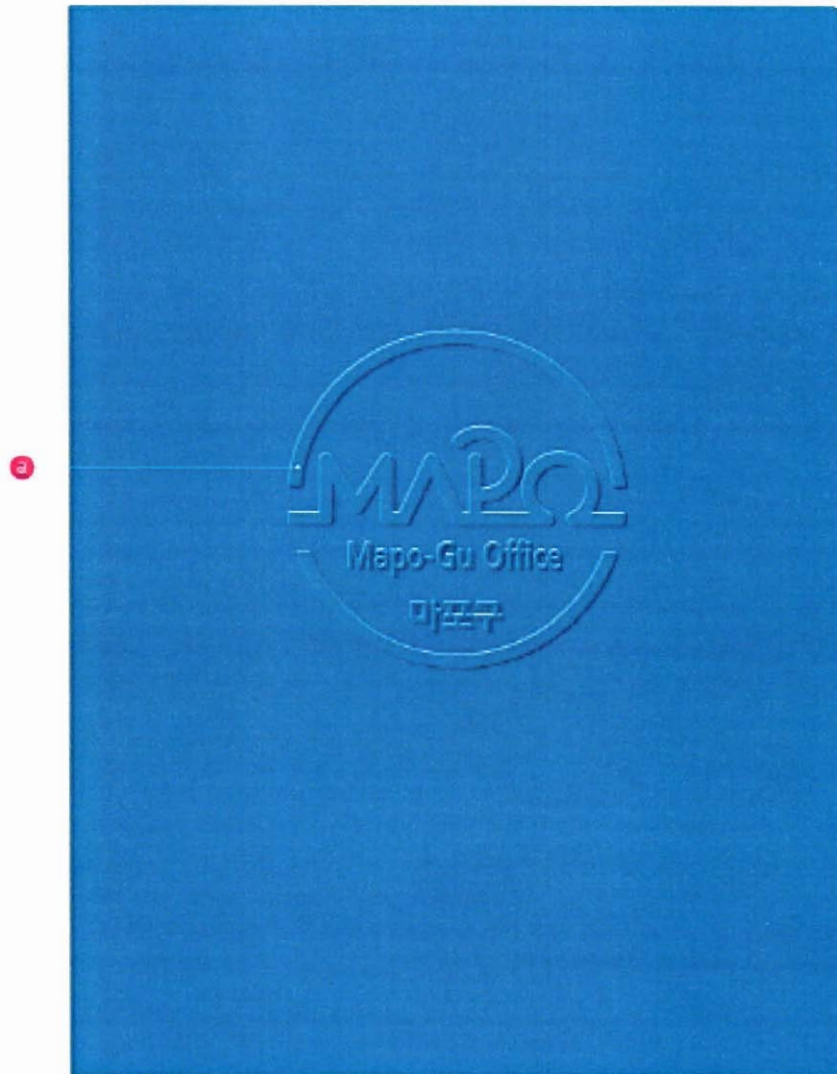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[표 지]



- 크기 : 220mm × 310mm
- 제작 : 인조가죽, ㉠-형압가공
- 색상 : MAPO Blue

[별지 제2호서식]

[내 지]

제	호
	
표 창 장	
(표 창 문)	소속(주소) 직 성명
20 년 월 일	
마포구청장 ○○○	

※ 표창장·상장·감사장에 적용하며,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

○ 크기 : 210mm × 297mm

○ 제작 : 옵셋인쇄

○ 색상 : 바탕 흰색, 구획장 MAPO Sky Blue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표창대상)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, 개인, 기관 및 단체와 그 임·직원에게 수여한다.	제3조(표창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 -- <u>임직원</u> --.
제4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<u>구민상(이하 “구민상”이라 한다)</u> 의 4종으로 한다.	제4조(표창의 종류) ----- ----- <u>구민상</u> ----- -----.
제9조(구민상) ①·② (생략) ③ 구민상의 시행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	제9조(구민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
제10조(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) ① 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<u>별지 제4호서식</u> 까지에 따른다. ② (생략)	제10조(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) ①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 까지를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적심의) ① (생략)

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
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
며,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
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
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

구성)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
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
마포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
위원회라한다)를 구성·운영
하되,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
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
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<신
설>

① (생략)

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
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
원이 소속된 부서장 등은 그 공

제13조(공적심의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 감사
담당관에게 -----
-----.

제14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

구성) ① -----

------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부

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계획에
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
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
한다.

③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② 부서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
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
를 추천할 수 있다.

적사항을 조사한 후, 그 공적이
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
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
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사회직능단체, 공익단체 등
으로부터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
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문
별 해당부서장 등은 그 공적사
항을 조사한 후, 이미 수립한 부
문별 표창계획 인원의 범위에서
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표
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
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(표창자 사후관리) ① (생
략)

②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 또는
표창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
다.

1. 구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공
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
경우

2.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
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
건의한 경우

<삭 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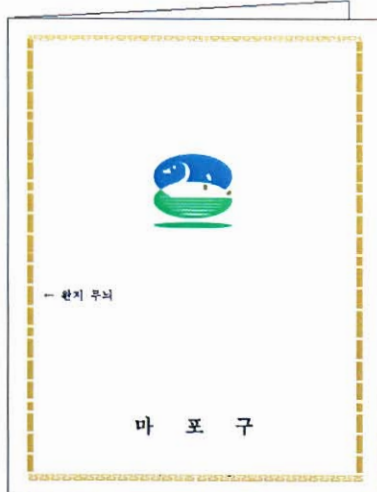
제17조(표창자 사후관리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표창수상자를 ---

-

[별지 제1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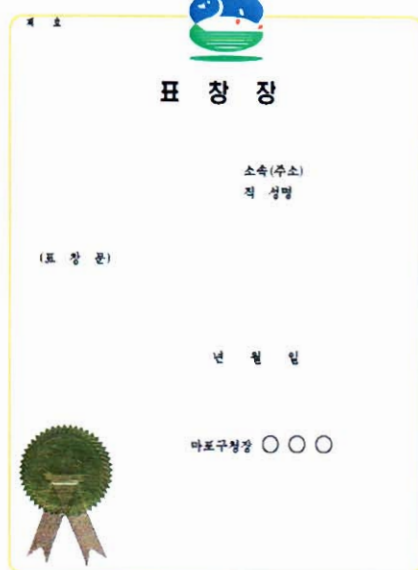
[표 지]



※ 바탕 : 진감색, 구획장 및 글씨 : 금박

[별지 제2호서식]

[내 지]



※ 바탕 : 연주황, 구획장 및 리본 : 금박, 글씨 : 검정색, 테두리 줄 : 주황색

[별지 제1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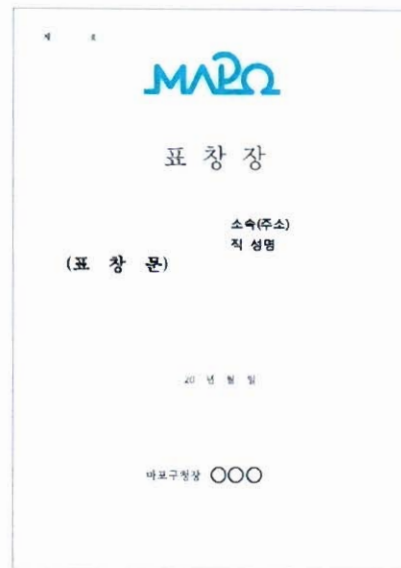
[표 지]



- 크기 : 220mm × 310mm
- 제작 : 인조가죽, ㉠-형압가공
- 색상 : MAPO Blue

[별지 제2호서식]

[내 지]



- ※ 표창장·상장 갑사장에 적용하며,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
- 크기 : 210mm × 297mm
 - 제작 : 읍셋인쇄
 - 색상 : 바탕 흰색, 구획장 MAPO Sky Blue

[별지 제3호서식]

[내 지]

제 호



상 장

소속(주소)
직 성명

(상 장 문)

년 월 일

마포구청장 ○ ○ ○



※ 바탕 : 연주왕, 구위장 및 리본 : 금박, 글씨 : 검정색, 테두리
줄 : 주황색

<삭 제>

[별지 제4호서식]

[내 지]

제 호



감 사 장

소속(주소)
직 성명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마포구청장 ○ ○ ○



※ 바탕 : 연주왕, 구위장 및 리본 : 금박, 글씨 : 검정색, 테두리
줄 : 주황색

<삭 제>